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 소량화 및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소용량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량제 규격봉투 신규 제작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 용량별 용도 추가  
(안 별표 1, 안 별표 2)
- 50ℓ 이상 생활 종량제 규격봉투 무게 상한 규정(안 제9조)

-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및 수수료 조정(안 별표 3)
- 대형폐기물 신고지를 전 동주민센터로 변경(안 제9조, 제27조, 제29조)
-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안 제30조)
-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관련 조항 정비(안 33조, 안 3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소용량 생활 종량제 봉투와 유통매장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용량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 현 조례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중 누락 또는 유사품목과 신규 품목을 정비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의 지침<sup>1)</sup>에 따라 종량제 봉투 규격에 의한 무게 상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관할 동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여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안 제29조제4항제2호 동일)

#### 1)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6.11.10)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구분	50ℓ 봉투	75ℓ 봉투	100ℓ 봉투
환산무게	13kg(12.5)	19kg(18.75)	25kg

- 안 제30조제3항의 가산금 징수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 안 제33조, 안 제34조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 하였으며,
- 안 제35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안 별표 5, 안 별지 제7호 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 안 제13조제4항의 별표1에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량제 봉투 신규제작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 봉투 2ℓ를 60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3ℓ를 90원으로 정하여 추가하였고,
- 안 제15조제2호의 별표2에 용량별로 2ℓ에 생활폐기물용, 3ℓ, 5ℓ, 10ℓ, 20ℓ 30ℓ에 재사용 용도표기를 추가 하였으며
- 안 27조제1항제2호의 별표 3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표의 기존 총 108개 품목에 79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하고, 기존 26개 품목을 세분화하여 43규격을 신규 추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유사품목 5개 품목을 삭제 통합하여 총 182개 품목으로 정비하였으며 폐소형가전 36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15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상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또는 소 가구 주택 증가로 수요가 요구되는 종량제봉투를 소형·다양화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과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일부품목 인상은 매년 수수료 수입에 대비하여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2006년 이후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 최근 수수료를 개정한 자치구와 비교하여 인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청소예산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수료 인상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 신규추가 및 삭제, 폐가전 무상수거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홍보 등을 통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며, 아울러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제목에 “연도별 규격봉투가격” 을 “규격봉투가격” 으로 변경하고 2015년도 항목과 비교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별표 1에 2015년도 가격과 2017년도 가격을 함께 표기해 놓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수정내용

- 별표 1의 제목 “연도별 규격봉투가격”을 “규격봉투가격”으로 하고 표의 “2015년”란을 삭제하고, “2017년”을 “가격”으로 하고 비교를 삭제함.

####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10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 2017. 12. 5.

제안자 : 허홍석 위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별표 1에 2015년도 가격과 2017년도 가격을 함께 표기해 놓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수정내용

- 별표 1의 제목 “연도별 규격봉투가격”을 “규격봉투가격”으로 하고 표의 “2015년”란을 삭제하고, “2017년”을 “가격”으로 하고 비고를 삭제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용 량	가 격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 ℓ	60
	3 ℓ	90
	5 ℓ	130
	10 ℓ	250
	20 ℓ	490
	30 ℓ	740
	50 ℓ	1,250
	75 ℓ	1,880
	100 ℓ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ℓ	400
	20 ℓ	800
	50 ℓ	2,000
	75 ℓ	3,000
	100 ℓ	4,000
특수규격 봉투	10 ℓ	1,020
	20 ℓ	2,040
	50 ℓ	5,10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 연도별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2015년</th> <th style="width: 15%;">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7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5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0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9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58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49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2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특수규격 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67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3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3,320</td> <td style="text-align: center;">5,100</td> </tr> </tbody> </table> <p>비고 : 규격봉투가격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p>		구 분	2015년	2017년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5 l	100	130	10 l	200	250	20 l	400	490	30 l	600	740	50 l	1,010	1,250	75 l	1,520	1,880	100 l	2,030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l	290	400	20 l	580	800	50 l	1,490	2,000	75 l	2,220	3,000	특수규격 봉투	10 l	670	1,020	20 l	1,330	2,040	50 l	3,320	5,100	<p>[별표 1] 연도별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2015년</th> <th style="width: 15%;">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2 l</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l</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7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5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0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9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58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49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2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특수규격 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67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3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3,320</td> <td style="text-align: center;">5,100</td> </tr> </tbody> </table> <p>비고 : 규격봉투가격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p>		구 분	2015년	2017년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 l	-	60	3 l	-	90	5 l	100	130	10 l	200	250	20 l	400	490	30 l	600	740	50 l	1,010	1,250	75 l	1,520	1,880	100 l	2,030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l	290	400	20 l	580	800	50 l	1,490	2,000	75 l	2,220	3,000	특수규격 봉투	10 l	670	1,020	20 l	1,330	2,040	50 l	3,320	5,100	<p>[별표 1]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용 량</th> <th style="width: 15%;">가 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2 l</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l</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4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7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2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8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 l</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특수규격 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1,0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2,0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l</td> <td style="text-align: center;">5,100</td> </tr> </tbody> </table>	구 분	용 량	가 격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 l	60	3 l	90	5 l	130	10 l	250	20 l	490	30 l	740	50 l	1,250	75 l	1,880	100 l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l	400	20 l	800	50 l	2,000	75 l	3,000	특수규격 봉투	10 l	1,020	20 l	2,040	50 l	5,100
	구 분	2015년	2017년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5 l	100	130																																																																																																																																													
	10 l	200	250																																																																																																																																													
	20 l	400	490																																																																																																																																													
	30 l	600	740																																																																																																																																													
	50 l	1,010	1,250																																																																																																																																													
	75 l	1,520	1,880																																																																																																																																													
	100 l	2,030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l	290	400																																																																																																																																												
20 l		580	800																																																																																																																																													
50 l		1,490	2,000																																																																																																																																													
75 l		2,220	3,000																																																																																																																																													
특수규격 봉투	10 l	670	1,020																																																																																																																																													
	20 l	1,330	2,040																																																																																																																																													
	50 l	3,320	5,100																																																																																																																																													
	구 분	2015년	2017년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 l	-	60																																																																																																																																													
	3 l	-	90																																																																																																																																													
	5 l	100	130																																																																																																																																													
	10 l	200	250																																																																																																																																													
	20 l	400	490																																																																																																																																													
	30 l	600	740																																																																																																																																													
	50 l	1,010	1,250																																																																																																																																													
	75 l	1,520	1,880																																																																																																																																													
	100 l	2,030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l	290	400																																																																																																																																												
20 l		580	800																																																																																																																																													
50 l		1,490	2,000																																																																																																																																													
75 l		2,220	3,000																																																																																																																																													
특수규격 봉투	10 l	670	1,020																																																																																																																																													
	20 l	1,330	2,040																																																																																																																																													
	50 l	3,320	5,100																																																																																																																																													
구 분	용 량	가 격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 l	60																																																																																																																																														
	3 l	90																																																																																																																																														
	5 l	130																																																																																																																																														
	10 l	250																																																																																																																																														
	20 l	490																																																																																																																																														
	30 l	740																																																																																																																																														
	50 l	1,250																																																																																																																																														
	75 l	1,880																																																																																																																																														
	100 l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l	400																																																																																																																																													
20 l		800																																																																																																																																														
50 l		2,000																																																																																																																																														
75 l		3,000																																																																																																																																														
특수규격 봉투	10 l	1,020																																																																																																																																														
	20 l	2,040																																																																																																																																														
	50 l	5,1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영등포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배출”을 “배출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무게를 제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관할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5의 규정”을 “별표 5”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할 동장”을 각각 “동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관할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4조제1항의 “별표5의 1”을 “영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중 가목”으로 한다.

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용 량	가 격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 l	60
	3 l	90
	5 l	130
	10 l	250
	20 l	490
	30 l	740
	50 l	1,250
	75 l	1,880
	100 l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l	400
	20 l	800
	50 l	2,000
	75 l	3,000
	100 l	4,000
특수규격 봉투	10 l	1,020
	20 l	2,040
	50 l	5,100

[별표 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5조제2호 관련)

용량(ℓ)	용도
2	생활폐기물용
3	재사용
5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1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2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3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품 목 별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규 격	부과금액		
자동판매기	음료담배	14,000	온 수 기	높이 1m 이상	2,000
	자가 소형	5,500		높이 1m 미만	면제
TV	42인치 이상	6,000	오디오 본체	높이 1m 이상	5,000
	25인치 이상	3,600		높이 1m 미만	면제
	25인치 미만	3,000	전자 시계		면제
가스 레인지		2,500	세 단 기	높이 1m 이상	4,500
가스오븐 렌지	높이 1m 이상	4,800	높이 1m 미만	면제	
	높이 1m 미만	2,400	선 풍 기		면제
게임기 오락기	업소용	10,000	DVD,비디오(VTR)		면제
	50cm 이상	5,000	오디오 스피커		면제
	50cm 미만	3,000	전자레인지		면제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3,000	전 기 밥 솥	(보온밥솥)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전화기·휴대폰		면제
김 치 냉 장 고	130L 이상	5,000	청 소 기		면제
	130L 미만	3,000	카세트 라디오		면제
냉 장 고	업소용	15,000	커피포트		면제
	500L 이상	9,500	헤어드라이어		면제
	500L 미만	7,100	컴퓨터 (본체,모니터)		면제
	300L 이상	4,800	컴퓨터복합기		면제
에어컨 실외기	높이 1m 이상	2,000	전기 비데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컴퓨터 키보드		면제
에 어 컨	264㎡ 이상	9,000	탈 수 기		면제
	66㎡ 이상	6,000	토 스 터 기		면제
	66㎡ 미만	4,000	팩 시 밀 리		면제
온 풍 기	264㎡ 이상	8,500	휴대폰 충전기		면제
	66㎡ 이상	5,500	스 캐 너		면제
	66㎡ 미만	3,500	프 린 터		면제
복 사 기 (영업용프린터)	업소용	9,500	가습기		면제
	높이 1m 이상	5,000	노트북 컴퓨터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녹 즈 기		면제
환 풍 기	업 소 용	2,500	다 리 미		면제
	가 정 용	면제	모 دم		면제
세 탁 기	6kg 이상	5,000	믹 서 기		면제
	6kg 미만	3,600	전기 히터		면제
식 기 건 조 기	높이 1m 이상	3,500	카 메 라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프로젝터		면제
식 기 세 척 기	높이 1m 이상	3,500			
	높이 1m 미만	면제			
정 수 기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면제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가 구 류	TV 받침	3,000	가 구 류	진 열 대·서반 (목재, 철재)	1㎡ 당	3,000		
	의 자	3인용		6,000	케비닛	90cm x 180cm	4,000	
		2인용		4,500		4단 이상	3,600	
		1인용		3,000		3단 이하	2,400	
		좌식의자		1,000		병 풍	2폭당	1,000
		바퀴 달린 의자 (대형)		5,000	창 문		2,000	
		바퀴 달린 의자 (소형)		3,000	오디오 장식장		2,500	
	거 울	1㎡ 당		2,000	창 식 장 (유리 별도)	높이 180cm 이상	10,000	
		1㎡ 미만		1,000		높이 120cm 이상	5,500	
	렌즈대 수납장			4,000		높이 120cm 미만	4,000	
	화 장 대	가정용		3,600	찬 장	폭 130cm 이상	10,000	
	문 갑			3,600		폭 120cm 이상	7,000	
	문 짝	1 개당		2,000		폭 90cm 이상	4,000	
	서 략 장	5단 이상		5,000	폭 90cm 미만	3,500		
		4단 이하		3,000	책 (유리별도) 상	서랍 없음	3,000	
	신 발 장	높이 1.5m 이상		4,000		편수(한쪽서랍)	5,000	
		높이 1.5m 미만		3,000		양수(양쪽서랍)	8,300	
	쇼 파 (안락의자)	4인용		10,000		H형책상 (상판 책상 사립포함)	10,000	
		3인용		7,500		컴퓨터 책상	3,000	
		2인용		6,000		책상 상판	2,000	
		1인용		3,000	책 장	90cm X 180cm 이상	9,000	
		스툴		2,500		90cm X 180cm 미만	5,000	
	스탠드 옷걸이			2,000		4단 이하	2,000	
		장롱		가로 120cm 이상	17,900	책 꽂 이 (책 상 용)	3단 이상	3,000
				가로 90cm 이상	11,900		3단 미만	1,500
	가로 90cm 미만			7,000	침 대	1인용 세트	12,000	
	아기 옷장			3,000		2인용 세트	16,000	
	비닐 옷장			2,000		1인용 매트리스(라텍스)	6,000	
식 탁		5인 이상	5,000	2인용 매트리스(라텍스)		8,000		
		4인 이하	4,000	1인용 침대틀		6,000		
	3인 이하	3,000	2인용 침대틀	8,000				
식 탁 (대리석)	6인 이상	12,000	유아용	3,000				
	4인 이상	8,000	어린이 2층	15,000				
탁 자	협탁	2,000	1인용 접이식	7,000				
	응접탁자	2,000	2인용 접이식	10,000				
	2인용	3,000	소파 겸용 침대	13,000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침 대 (돌, 옥, 황토 침대)	2인용 돌 옥 황토		30,000		
	10인용 미만	6,000		1인용 돌 옥 황토		25,000		
교자상밥상	4인 이상	2,500	침대 헤드	2인용 이상		3,000		
	3인 이하	1,000		2인용 미만	2,000			
싱 크 대	상판길이 120cm 이상	6,000	쓰레기 통	사무실 옥외용	2,000			
	상판길이 120cm 미만	4,000		가정용	1,000			
	상판(대리석) 120cm 이상	12,000						
	상판(대리석) 120cm 미만	10,000						
개 수 대		4,000						

품 목 별			품 목 별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가 방 류 (캐리어)	골프채 가방	3,000	수 도 호 스	10m 당	1,000
	높이 50cm 이상	2,500		스 키	스키(부츠별도)
	높이 50cm 미만	1,500	스키부츠		2,000
빨 래 건조대	길이 1m 이상	2,000	액 자	높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1,000		높이 50cm 이상 ~ 1m 미만	2,000
계 시 판 (화이트보드)	가로 1m 이상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가로 1m 미만	1,000	어 (수족관) 항	가로1m 높이 60cm 초과	6,000
고 무 통	지름 1m 이상	5,000		가로1m 높이 60cm 이하	4,000
	지름 50cm 이상	3,000	항 아 리	높이 50cm 이상	2,000
	지름 50cm 미만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파 티 션	1㎡당	2,000	우 산	일반용	1,000
석 고 보 드	1㎡당	2,000	유 리	1㎡ 당	2,000
목 재 파 레 트	1㎡당	2,000	스노우 보 드		3,000
금 (가 정 용) 고	가장 긴면 1m 이상	8,000	이 불	1채당	2,000
	가장 긴면 1m 미만	5,000	인 형	1개당	2,000
난 로	석유난로	2,500	자 전 거	성인용	3,600
	가스난로	2,500		아동용 2륜	3,600
	전기	면제		아동용 3륜	2,400
다 리 미 판		1,000	장 난 감	길이 50cm 이상	2,000
도 마	가정용	1,000		길이 50cm 미만	1,000
	업소용	2,000	장 판	3.3㎡당	1,000
동 자 리 (대자리,놀이매트)	1㎡당	1,000		전기장판(1인용)	2,000
	자 석 매트	매트리스 가격 준용		동일	전기장판(2인용)
바 독 판	두께 12mm 이상	1,000		옥 자석 온수 등 1인용	4,000
	두께 60mm 이상	2,000		옥 자석 온수 등 2인용	7,000
방 석	겨울용	1,000	카 페 트	3.3㎡당	2,000
	여름용	500	마 네 킹	1m 이상	5,000
배 기 후 드		2,000		1m 미만	3,000
베개(라텍스베개)		1,000	조 면 기 구 (모든 규격)	폭, 높이 1m 이상	2,000
벽 시 계	길이 1m 이상	2,500		폭, 높이 1m 미만	1,000
	길이 1m 미만	1,000		상들리에	2,000
보 행 기		2,000	천 막	길이 6m 이상	7,000
유 모 차		2,400		길이 6m 미만	5,000
유아용 목마		1,000	아이스 박스	50L 이상	3,000
블 라 인 드 (자 바 라)	1㎡당	1,000		30L 이상	2,000
목욕탕수건함		1,000		30L 미만	1,000
행 거	2단 행거	3,000			
	1단 행거	2,000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	카 시 트		2,000	기 타 류	세 면 대	세면대 세트	3,000
	재 봉 틀		2,500		욕 조	일 반 용	6,000
	커 튠	1 m <sup>2</sup> 당	1,000			유 아 용	3,000
	커 튠 봉		1,000		화 분	높이 50cm 이상	1,500
	킥 보 드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라 (개당) 켓	테니스 라켓	1,000		타 이 어	지름 110cm 이상	11,000
		베드민턴 라켓	500			지름 60cm ~110cm	5,000
	텐 트	4인용 이상	4,000			지름 60cm 미만	3,000
		4인용 미만	3,000			파라솔	모든규격
	피 아 노	일반	17,900		방충망	1 m <sup>2</sup>	2,000
		디지털	5,500		형광등 틀		1,000
	오 르 간	일반	4,800		쌀 통		3,600
		전자식	3,000		드럼통		5,000
	개 집		3,000		죽부인		1,000
	켓 타워		3,000		등산스틱		1,000
	헬 스 기 구	런닝머신(수동)	15,000		전기판벨	3.3m <sup>2</sup> 당	2,000
		헬스자전거	7,000		CD꽃이		2,000
		스텝퍼	4,000		볼링공		3,000
		식업보드	4,000		소화기		3,000
	화 환		3,000		컬러 박스 (공간 박스)	3단 이상	2,000
	휠 체 어		3,000			2단 미만	1,000
	골 프 채	개당	2,000		탁 구 대		7,000
	에어풍선		3,000		발판 매트		1,000
	미끄럼틀	유아용	5,000		신 발	1켤레	500
	평 상	1.5mX1.5m 이상	7,000		안 마 기		2,000
		1.5mX1.5m 미만	5,000		안 마 의 자		10,000
	(입) 간 판	40cm X 100cm 당	4,000		발 마사지 기계		4,000
		가로 1m 이상	2,000		트램블린		1,000
		가로 1m 미만	1,000		의료용 침대		12,000
		고무통 입간판	5,000		유아용 자동차		3,000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유아용 그네		1,000		
물 탱 크	1톤당	14,000	폐목재	1kg 당	200		
	0.5톤 이상	6,500	폐플라스틱	1kg 당	200		
	0.5톤 미만	3,000					
변 기		4,500					
보일러	16kcal/h 이상	10,000					
	16kcal/h 미만	7,500					

-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한다.
-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1. ~ 9. (생략)</p> <p>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 ③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u>구의회</u>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영등포구의 책무) ① ~ ③ (생략)</p> <p>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13조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민원성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p>	<p>제1조(목적) ----- -----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 -----.</p> <p>제2조(정의)----- ----- 뜻은 ----- --.</p> <p style="margin-left: 20px;">1.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④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u>----- -----.</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 ----- ----- ----- -----.</p> <p style="margin-left: 20px;">1. -----</p>

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사용

2. (생략)

3. 대형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일시, 장소에 배출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 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  
----- 배출한다.  
다만,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무게를 제한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 동장 -----  
-----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  
-----  
-----  
-----  
-----  
-----  
-----  
-----  
-----  
----- 별표 5 -----  
-----

· 운반·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과 같다.
3. (생략)

제27조(중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할 동장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생략)

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하여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  
-----  
-----.

1. (현행과 같음)
2. ----- 별표 2와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중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동장 -----  
-----  
-----.
2. (현행과 같음)

③ -----  
-----  
----- 동장  
-----  
-----.

한다.

④、⑤ (생략)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①、② (생략)

③ 공공장소에서의 집회、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집회、행사의 주관자、주최자로부터 사전에 예치 받을 수 있다.

④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신고서에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생략)

제30조(가산금 등) ①、② (생략)

③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2항-----

-----

-----.

④ -----

-----

-----.

1. (현행과 같음)

2. ----- 동장-----

-----

-----

-----

-----.

-----

-----

-----.

3. (현행과 같음)

제30조(가산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징수한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33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대상은 별표 5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2. ~ 4. (생략)

③ ~ ⑦ (생략)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특별시 OCR처리용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제6장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의 지급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  
-----  
-----  
-- 영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중 가목  
-----.

② -----  
-----  
-----.

1. ----- 생년월일-----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삭제〉

장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인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

〈삭 제〉

〈삭 제〉

제36조(의견진술) 〈삭 제〉

〈삭 제〉

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

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연도별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7년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5 ℓ	100	130
	10 ℓ	200	250
	20 ℓ	400	490
	30 ℓ	600	740
	50 ℓ	1,010	1,250
	75 ℓ	1,520	1,880
	100 ℓ	2,030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ℓ	290	400
	20 ℓ	580	800
	50 ℓ	1,490	2,000
	75 ℓ	2,220	3,000
	100 ℓ	2,960	4,000
특수규격 봉투	10 ℓ	670	1,020
	20 ℓ	1,330	2,040
	50 ℓ	3,320	5,100

비고 : 규격봉투가격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용 량	가 격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 ℓ	60
	3 ℓ	90
	5 ℓ	130
	10 ℓ	250
	20 ℓ	490
	30 ℓ	740
	50 ℓ	1,250
	75 ℓ	1,880
	100 ℓ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ℓ
20 ℓ		800
50 ℓ		2,000
75 ℓ		3,000
100 ℓ		4,000
특수규격 봉투	10 ℓ	1,020
	20 ℓ	2,040
	50 ℓ	5,100



[별표 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15조제2호 관련)

용량(ℓ)	용도
5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1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3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별표 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15조제2호 관련)

용량(ℓ)	용도
2	생활폐기물용
3	재사용
5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1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2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3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현 행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연번	품 목 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1	오디오본체	대형(높이1M이상)	5,000	
2		소형(높이1M미만)	3,000	
3	오디오스피커	1개당	1,500	
4	오디오장식장		2,500	
5	정수기	20ℓ 이상	5,000	
6		20ℓ 미만	3,000	
7	전기밥솥	10인 이상	2,500	
8		10인 미만	2,000	
9	V T R (DVD포함)		3,000	
10	카세트라디오		1,500	
11	다리미		1,000	
12	다림질 판		1,000	

개 정 안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가 전 제 품 류	자동 판매기	음료· 담배	14,000	온 수 기	높이 1m 이상	2,000
		자가 소형	5,500		높이 1m 미만	면제
	TV	42인치 이상	6,000	오디오 본체	높이 1m 이상	5,000
		25인치 이상	3,600		높이 1m 미만	면제
		25인치 미만	3,000	전자 시계		면제
	가스 레인지		2,500	세 단 기	높이 1m 이상	4,5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 1m 이상	4,800		높이 1m 미만	면제
		높이 1m 미만	2,400	선 풍 기		면제
	게임기 오락기	업소용	10,000	DVD,비디오 (VTR)		면제
		50cm 이상	5,000	오디오 스피커		면제
		50cm 미만	3,000	전자레인지		면제

13	헤어드라이		1,000	
14	선풍기	업소용	2,500	
15		가정용	1,800	
16	전화기		1,000	
17	청소기	가정용	2,000	
18		업소용	3,500	
19	자동판매기	대형	14,000	
20		소형	5,500	
21	냉장고	500ℓ 이상	9,500	
22		300ℓ 이상	7,100	
23		300ℓ 미만	4,800	
24		업소용	15,000	
25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6,000	
26		12인치 이상	3,600	
27	텔레비전 받침		2,500	
28	세탁기	6kg 미만	3,600	
29		6kg 이상	5,000	
30	탈수기		2,400	

공기 청정기	높이 1m 이상	3,000	전기 밥솥 (보온밥솥)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전화기·휴대폰	면제
김치 냉장고	130L 이상	5,000	청 소 기	면제
	130L 미만	3,000	카세트 라디오	면제
냉장고	업소용	15,000	커피포트	면제
	500L 이상	9,500	헤어드라이어	면제
	500L 미만	7,100	컴퓨터 (본체, 모니터)	면제
	300L 이상	4,800	컴퓨터복합기	면제
에어컨 실외기	높이 1m 이상	2,000	전기 비데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컴퓨터 키보드	면제
에어컨	264m <sup>2</sup> 이상	9,000	탈 수 기	면제
	66m <sup>2</sup> 이상	6,000	토 스 터 기	면제
	66m <sup>2</sup> 미만	4,000	팩 시 밀 리	면제
온풍기	264m <sup>2</sup> 이상	8,500	휴대폰 충전기	면제
	66m <sup>2</sup> 이상	5,500	스 캐 너	면제
	66m <sup>2</sup> 미만	3,500		
복사기	업소용	9,500		

31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2,400	
32		높이1m 미만	2,000	
33	가습기		1,500	
34	보일러	16,000cal/h 이상	10,000	
35		16,000cal/h 미만	7,500	
36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37	온풍기	80평 이상	8,500	
38		20평 이상	5,500	
39		20평 미만	3,500	
40	에어컨	80평 이상	9,000	
41		20평 이상	6,000	
42		20평 미만	4,000	
43	난로	전기난로	2,400	
44		석유난로	2,500	
45	팬히터	벽걸이형	2,000	
46	썩크대	60cm 미만	3,500	
47	개수대		4,000	
48	밥상	4인 이상	2,500	

	(영업용 프린터)	높이 1m 이상	5,000		프린터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가습기		면제
	환풍기	업 소 용	2,500		노트북 컴퓨터		면제
		가 정 용	면제		녹즙기		면제
	세탁기	6kg 이상	5,000			다리미	
		6kg 미만	3,600		모뎀		
	식기 건조기	높이 1m 이상	3,500		믹서기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전기히터	
	식기 세척기	높이 1m 이상	3,500		카메라		
		높이 1m 미만	면제			프로젝터	
	정수기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면제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가 구	TV받침		3,000	가 구	진열 대·선반 (목재,철재)	1㎡ 당	3,000
		3인용	6,000			케비닛	5단 이상
	의자	2인용	4,500		4단 이상		3,600
		1인용	3,000				

49		3인 이하	1,000	
50	교자상		2,000	
51	쌀통		3,600	
52	녹즙기		2,000	
53	식기건조기		1,500	
54	식기세척기		3,500	
55	믹서기		1,500	
56	김치 독	용기 류 제외	4,000	
57	환풍기	가정용	1,500	
58		업소용	2,500	
59	전자레인지		2,500	
60	가스 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800	
61		높이 1m미만	2,400	
62	가스렌지		2,500	
63	식탁	5인 이상	4,500	
64		4인 이하	3,500	
65		3인 이하	2,500	
66	스탠드 옷걸이		2,000	
67	서랍장	5단 이상	4,800	

류	좌식의자	좌식의자	1,000	류	병 풍	3단 이하	2,400	
		바퀴 달린 의자(대형)	바퀴 달린 의자(대형)			5,000	2폭당	1,000
			바퀴 달린 의자(소형)			3,000	창 문	2,000
	거울	1㎡ 당	2,000		장 식 장 (유리 별도)	높이 180cm 이상	오디오 장식장	2,500
		1㎡ 미만	1,000				높이 120cm 이상	10,000
	렌지대 수납장		4,000				높이 120cm 미만	5,500
	화장대	가정용	3,600		찬 장	폭 130cm 이상	10,000	
	문 갑					3,600	폭 120cm 이상	7,000
							문 짝	1 개당
	서랍장	5단 이상	5,000			폭 90cm 미만	3,500	
		4단 이하	3,000		책 상 (유리별도)	서랍 없음	3,000	
	신발장	높이 1.5m 이상	4,000			편수 (한쪽서랍)	5,000	
		높이 1.5m 미만	3,000			양수	8,300	
	쇼 파	4인용	10,000					

68		4단 이하	2,400	
69	화장대		3,600	
70	신발장	높이 120cm이상	3,500	
71		높이 120cm미만	2,400	
72	문갑		3,600	
73	장식장		4,800	
74	찬장, 진열장		3,500	
75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76		10인용 미만	6,000	
77	응접탁자		2,000	
78	장롱	120cm(4자) 1쪽	17,900	
79		90cm(3자) 1쪽	11,900	
80	아기옷장		3,000	
81	소파	1인용	2,400	
82		2인용	6,000	
83		3인용	7,500	
84		4인용	10,000	
85		의자	1인용	2,000

(안락의자)	3인용	7,500	책 장	(양쪽서랍) H형책상 (상판, 책상, 서랍포함)	10,000		
	2인용	6,000		컴퓨터 책상	3,000		
	1인용	3,000		책상 상판	2,000		
	스툴	2,500		90cm X 180cm 이상	9,000		
	스탠드 옷걸이	2,000		90cm X 180cm 미만	5,000		
	장롱	가로 120cm 이상		17,900	책 꽂 이 (책 상 용)	3단 이상	3,000
		가로 90cm 이상		11,900		3단 미만	1,500
		가로 90cm 미만		7,000		1인용 세트	12,000
	아기 옷장	3,000		침 대	2인용 세트	16,000	
	비닐 옷장	2,000			1인용 메트리스 (라텍스)	6,000	
식 탁	5인 이상	5,000	2인용		8,000		
	4인 이하	4,000					
	3인 이하	3,000					
식 탁	6인 이상	12,000					

86		2인용	4,500	
87		3인용	6,000	
88	침대	1인용 세트	11,900	
89		1인용 매트리스	6,000	
90		1인용 침대 틀	6,000	
91		2인용 세트	17,900	
92		2인용 매트리스	9,500	
93		2인용 침대 틀	8,000	
94		유아용	3,000	
95		자석매트	침대 매트리스 규격	침대 가격 적용
96	팩시밀리		3,000	
97	복사기		9,500	
98	세단기		4,500	
99	책장	90cm×180cm 이상	8,500	
100		90cm×180cm 미만	5,000	
101	책꽂이	3단 미만	1,500	
102		3단 이상	3,000	
103	캐비닛		4,800	

	(대리석)	4인 이상	8,000			메트리스 (라텍스)			
		탁 자	협탁			2,000	1인용 침대틀	6,000	
	응접탁자		2,000			2인용 침대틀	8,000		
	2인용		3,000			유아용	3,000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어린이 2층	15,000		
		10인용 미만	6,000			1인용 접이식	7,000		
	교자상·밥상	4인 이상	2,500			2인용 접이식	10,000		
		3인 이하	1,000			소파 겸용 침대	13,000		
	상 크 대	상판길이 120cm 이상				6,000	침 대 (돌, 옥, 황토 침대)	2인용 돌, 옥, 황토	30,000
			상판길이 120cm 미만			4,000		1인용 돌, 옥, 황토	25,000
상판(대리석) 120cm 이상			12,000	침대 헤드	2인용 이상	3,000			
		상판(대리석) 120cm	10,000		2인용 미만	2,000			

104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600	
105		3단 이하	2,400	
106	책상	양쪽서랍	8,300	
107		한쪽서랍	4,800	
108		컴퓨터	3,000	
109	피아노	일반	17,900	
110		디지털	5,500	
111	오르간		4,800	
112	컴퓨터본체		4,000	
113	컴퓨터모니터	20인치 이상	3,000	
114		20인치 미만	2,000	
115		LCD	2,000	
116	컴퓨터 자판		1,000	
117	노트북컴퓨터		3,000	
118	프린터	최대 A4 이하	3,000	
119		최대 B4 이상	4,000	
120	카펫	1평당	2,000	
121	장판	1평당	1,000	
122	돛자리	1평당	1,000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	가방류 (캐리어)	골프채 가방	3,000	생 활 용 품 류	수 도 호 스	10m 당	1,000	
		높이 50cm 이상	2,500		스 키	스키(부츠별도)		3,000
		높이 50cm 미만	1,500			스키부츠		2,000
	빨 래 건조대	길이 1m 이상	2,000		액 자	높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1,000			높이 50cm 이상 ~ 1m 미만		2,000
	게시판 (화이트 보드)	가로 1m 이상	2,000				높이 50cm 미만	
		가로 1m 미만	1,000		어 항 (수족관)	가로1m 높 이 60cm 초과		6,000
	고무통	지름 1m 이상	5,000				가로1m 높 이 60cm 이하	
		지름 50cm 이상	3,000		항 아 리	높이 50cm 이상		2,000
		지름 50cm	2,000					



123	전기담요		2,000	
124	이불	1채당	2,000	
125	인형 류	1개당	2,000	
126	장난감 류	1개당	1,500	
127	어항	가로 1m 높이 60cm 초과	6,000	
128		가로 1m 높이 60cm 이하	4,000	
129	목욕탕 수건 합		1,000	
130	재봉틀		2,500	
131	거울	높이 50cm 이상	1,500	
132		높이 50cm 미만	1,000	
133	가방류	높이 50cm 이상	2,500	
134		높이 50cm 미만	1,500	
135	골프가방		3,000	
136	금고		2,000	
137	병풍	2쪽 당	1,000	
138	화분	PVC 2개당	1,000	
139	항아리	높이 30cm 이하	1,000	

		미만				높이 50cm 미만	1,000
	파티션	1㎡ 당	2,000		우 산	일반용	1,000
	석고보드	1㎡ 당	2,000		유 리	1㎡ 당	2,000
	목재 파레트	1㎡ 당	2,000		스노우 보드		3,000
	금고 (가정용)	가장 긴면 1m 이상	8,000		이 불	1채당	2,000
		가장 긴면 1m 미만	5,000		인 형	1개당	2,000
	난 로	석유난로	2,500		자 전 거	성인용	3,600
		가스난로	2,500			아동용 2륜	3,600
		전기	면제			아동용 3륜	2,400
	다리미판		1,000		장 난 감	길이 50cm 이상	2,000
	도 마	가정용	1,000			길이 50cm 미만	1,000
		업소용	2,000				

140		높이 30cm 초과	2,000	
141	세면대		3,000	
142	욕조		6,000	
143	물탱크	15인용 이상	14,000	
144		15인용 미만	6,500	
145	변기		4,500	
146	비데		1,000	
147	쓰레기통	가정용	1,000	
148		사무실용, 옥외용	2,000	
149	유모차		2,400	
150	보행기		2,000	
151	유아용목마		1,000	
152	시계	대형	2,500	
153		소형	1,000	
154	액자	대형	2,000	
155		소형	1,000	
156	자전거	성인용	3,600	
157		아동용(이륜)	3,600	

	돛자리 (대자리, 놀이매트)	1㎡당	1,000		장 판	3.3㎡당	1,000	
	자석매트	매트리스 가격 준용	동일			전기장판(1 인용)	2,000	
	바둑판	두께 12mm 이상	1,000			전기장판(2 인용)	3,000	
		두께 60mm 이상	2,000			옥 자석 온수 등 1인용	4,000	
	방 석	겨울용	1,000			옥 자석 온수 등 2인용	7,000	
		여름용	500			카 페 트	3.3㎡당	2,000
	배기후드		2,000			마네킹	1m 이상	5,000
	베개(라텍 스베개)		1,000				1m 미만	3,000
	벽시계	길이 1m 이상	2,500			조명기구 (모든 규격)	폭, 높이 1m 이상	2,000
		길이 1m 미만	1,000				폭, 높이 1m 미만	1,000
	보행기		2,000				상들리에	2,000
	유모차		2,400					

158		아동용(삼륜)	2,400	
159	문짝	1개당	2,000	
160	폐목재	1kg당	200	
161	폐플라스틱	1kg당	200	
162	고무통	대형	3,000	
163	타이어	대형(1100mm 이상)	11,000	
164		중형(600~1100mm)	5,000	
165		소형(600mm 미만)	3,000	
166	유리	m <sup>2</sup> 당	2,000	
167	오락기	업소용	10,000	
168		가정용	3,000	

	유아용 목마		1,000		천 막	길이 6m 이상	7,000
	블라인드(자바라)	1 m <sup>2</sup> 당	1,000			길이 6m 미만	5,000
	목욕탕 수건함		1,000		아이스 박스	50L 이상	3,000
	행거	2단 행거	3,000			30L 이상	2,000
		1단 행거	2,000			30L 미만	1,000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생활용품류	카시트		2,000	기	세면대	세면대 세트	3,000
	재봉틀		2,500		욕 조	일반용	6,000
	커튼	1 m <sup>2</sup> 당	1,000	유아용		3,000	
	커튼봉		1,000	타 류	화 분	높이 50cm 이상	1,500
	키편드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라켓(개당)	테니스	1,000				

	라켓					
	베드민턴 라켓	500				
텐 트	4인용 이상	4,000		타이어	지름 110cm 이상	11,000
	4인용 미만	3,000			지름 60cm ~110cm	5,000
					지름 60cm 미만	3,000
피아노	일반	17,900		과라솔	모든규격	2,000
	디지털	5,500		방충망	1 m <sup>2</sup>	2,000
오르간	일반	4,800		형광등 틀		1,000
	전자식	3,000		쌀 통		3,600
개 집		3,000		드럼통		5,000
켓 타워		3,000		죽부인		1,000
헬스기구	런닝머신( 우동)	15,000		등산스틱		1,000
	헬스자전거	7,000		전기관넬	3.3 m <sup>2</sup> 당	2,000
	스텝퍼	4,000		CD꽃이		2,000
	شط업보드	4,000		볼링공		3,000
화 환		3,000		소화기		3,000
휠체어		3,000		컬러 박스 (공간 박스)	3단 이상	2,000
골 프 채	개당	2,000			2단 미만	1,000
에어풍선		3,000		탁구대		7,000
미끄럼틀	유아용	5,000				

평 상	1.5mX 1.5m 이상	7,000	발판매트		1,000
	1.5mX 1.5m 미만	5,000		신 발	1켤레
(입)간판	40cm X 100cm 당	4,000	안마기		2,000
	가로 1m 이상	2,000	안마 의자		10,000
	가로 1m 미만	1,000	발 마사지 기계		4,000
	고무통 입간판	5,000	트램블린		1,000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의료용 침대		12,000
물탱크	1톤당	14,000	유아용 자동차		3,000
	0.5톤 이상	6,500	유아용 그네		1,000
	0.5톤 미만	3,000	폐목재	1kg 당	200
변 기		4,500	폐플라스틱	1kg 당	200
보일러	16kcal/h 이상	10,000			
	16kcal/h 미만	7,500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10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요구되는 소용량 생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1회용 봉투 사용억제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또한 대형폐기물의 신고대상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선진 청소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50ℓ 이상 종량제 규격 봉투에 생활 쓰레기 배출시 무게 상한 규정(안 제9조)

나. 대형폐기물 신고지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 동 주민센터로 변경  
(안 제9조, 제27조, 제29조)

다.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 (안 제30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정비 (안 제33조)

마. 소용량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근거 마련 (안 별표1 및 별표 2)

바. 대형폐기물 신고대상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정비 (안 별표3)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종량제 규격봉투 및 동판 제작

2. 비용추계 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b>합계</b>	<b>10,270</b>	
2ℓ 생활폐기물 봉투	2,211	22원×100,000매×1.0054
3ℓ 재사용 봉투	879	25원×35,000매×1.0054
5ℓ 재사용 봉투	1,166	29원×40,000매×1.0054
10ℓ 재사용 봉투	1,664	36원×46,000매×1.0054
30ℓ 재사용 봉투	2,850	81원×35,000매×1.0054
동판 제작	1,500	300,000원×5개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2ℓ 생활폐기물	5,670	5,783	5,899	6,017	6,137	29,507
	3ℓ 재사용	2,976	3,036	3,096	3,158	3,221	15,487
	5ℓ 재사용	4,914	5,012	5,113	5,215	5,319	25,573
	10ℓ 재사용	10,867	11,084	11,306	11,532	11,763	56,552
	30ℓ 재사용	24,475	24,965	25,464	25,973	26,493	127,369
	소계(a)	48,902	49,880	50,878	51,895	52,933	254,488
세출	2ℓ 생활폐기물	2,211	2,255	2,300	2,346	2,393	11,506
	3ℓ 재사용	879	897	915	933	951	4,574
	5ℓ 재사용	1,166	1,189	1,213	1,237	1,262	6,068
	10ℓ 재사용	1,664	1,697	1,731	1,766	1,801	8,660
	30ℓ 재사용	2,850	2,907	2,965	3,024	3,085	14,832
	소계(b)	8,770	8,945	9,124	9,307	9,493	45,639
□ 총 비용(a-b)		40,132	40,935	41,753	42,588	43,440	208,849

※ 세입 : 종량제 봉투 판매비용

세출 :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8,770	8,945	9,124	9,307	9,493	45,639
	합계	8,770	8,945	9,124	9,307	9,493	45,639

6. 추가의견

- 추가의견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생활환경국 청소과 오유금
연 락 처	02-2670-343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영등포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배출”을 “배출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무게를 제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관할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5의 규정”을 “별표 5”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할 동장”을 각각 “동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관할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의 지급”으로 한

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4조제1항의 “별표5의 1”을 “영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중 가목”으로 한다.

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도별 규격봉투가격(제13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7년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ℓ	-	60
	3ℓ	-	90
	5ℓ	100	130
	10ℓ	200	250
	20ℓ	400	490
	30ℓ	600	740
	50ℓ	1,010	1,250
	75ℓ	1,520	1,880
	100ℓ	2,030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ℓ	290	400
	20ℓ	580	800
	50ℓ	1,490	2,000
	75ℓ	2,220	3,000
	100ℓ	2,960	4,000
특수규격 봉투	10ℓ	670	1,020
	20ℓ	1,330	2,040
	50ℓ	3,320	5,100

비고 : 규격봉투가격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5조제2호 관련)

용량(ℓ)	용도
2	생활폐기물용
3	재사용
5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1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2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3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품 목 별			품 목 별				
구 격	부과금액	구 격	부과금액				
가 전 제 품 류	자동차판매기	음료·담배	14,000	가 전 제 품 류	온 수 기	높이 1m 이상	2,000
		자가 소형	5,500			높이 1m 미만	면제
	TV	42인치 이상	6,000		오디오 본체	높이 1m 이상	5,000
		25인치 이상	3,600			높이 1m 미만	면제
		25인치 미만	3,000		전자 시계		면제
	가스 레인지		2,500		세 단 기	높이 1m 이상	4,500
	가스오븐 렌지	높이 1m 이상	4,800			높이 1m 미만	면제
		높이 1m 미만	2,400		선 풍 기		면제
	게임기 오락기	업소용	10,000		DVD,비디오(VTR)		면제
		50cm 이상	5,000		오디오 스피커		면제
		50cm 미만	3,000		전자레인지		면제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3,000		전 기 밥 솥	(보온밥솥)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전화기·휴대폰		면제
	김 치 냉 장 고	130L 이상	5,000		청 소 기		면제
		130L 미만	3,000		카세트 라디오		면제
	냉 장 고	업소용	15,000		커피포트		면제
		500L 이상	9,500		헤어드라이어		면제
		500L 미만	7,100		컴퓨터 (본체,모니터)		면제
		300L 이상	4,800		컴퓨터복합기		면제
	에어컨 실외기	높이 1m 이상	2,000		전기 비데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컴퓨터 키보드		면제
	에 어 컨	264㎡ 이상	9,000		탈 수 기		면제
		66㎡ 이상	6,000		토 스 터 기		면제
		66㎡ 미만	4,000		팩 시 밀 리		면제
	온 풍 기	264㎡ 이상	8,500		휴대폰 충전기		면제
		66㎡ 이상	5,500		스 캐 너		면제
		66㎡ 미만	3,500		프 린 터		면제
	복 사 기 (영업용프린터)	업소용	9,500		가습기		면제
		높이 1m 이상	5,000		노트북 컴퓨터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녹 즈 기		면제
환 풍 기	업 소 용	2,500	다 리 미		면제		
	가 정 용	면제	모 뎀		면제		
세 탁 기	6kg 이상	5,000	믹 서 기		면제		
	6kg 미만	3,600	전기 히터		면제		
식 기 건 조 기	높이 1m 이상	3,500	카 메 라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프로젝터		면제		
식 기 세 척 기	높이 1m 이상	3,500					
	높이 1m 미만	면제					
정 수 기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면제					

품 목 별			품 목 별					
구	류	구	류	구	류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가 구 류	TV 받침	3,000	가 구 류	침 열대.서반 (목재,철재)	1㎡ 당	3,000		
	의 자	3인용		6,000	케비닛	90cm x 180cm	4,000	
		2인용		4,500		4단 이상	3,600	
		1인용		3,000		3단 이하	2,400	
		좌식 의자		1,000	병 풍	2폭당	1,000	
		바퀴 달린 의자 (대형)		5,000	창 문		2,000	
		바퀴 달린 의자 (소형)		3,000	오디오 장식장		2,500	
	거 울	1㎡ 당		2,000	장 식 장 (유리 별도)	높이 180cm 이상	10,000	
		1㎡ 미만		1,000		높이 120cm 이상	5,500	
	렌지대 수납장	4,000		높이 120cm 미만		4,000		
	화 장 대	가정용		3,600	찬 장	폭 130cm 이상	10,000	
	문 갑			3,600		폭 120cm 이상	7,000	
	문 짝	1 개당		2,000		폭 90cm 이상	4,000	
	서 랫 장	5단 이상		5,000	폭 90cm 미만	3,500		
		4단 이하		3,000	책 상 (유리 별도)	서랍 없음	3,000	
	신 발 장	높이 1.5m 이상		4,000		편수(한쪽서랍)	5,000	
		높이 1.5m 미만		3,000		양수(양쪽서랍)	8,300	
	쇼 파 (안락의자)	4인용		10,000		H형책상 (상판 책상 사랍포함)	10,000	
		3인용		7,500		컴퓨터 책상	3,000	
		2인용		6,000		책상 상판	2,000	
		1인용		3,000	책 장	90cm X 180cm 이상	9,000	
		스툴		2,500		90cm X 180cm 미만	5,000	
	스탠드 옷걸이			2,000		4단 이하	2,000	
		장롱		가로 120cm 이상	17,900	책 폭 상 용	3단 이상	3,000
				가로 90cm 이상	11,900		3단 미만	1,500
	가로 90cm 미만			7,000	침 대	1인용 세트	12,000	
	아기 옷장	3,000		2인용 세트		16,000		
	비닐 옷장	2,000		1인용 매트리스(라텍스)		6,000		
식 탁	5인 이상	5,000	2인용 매트리스(라텍스)	8,000				
	4인 이하	4,000	1인용 침대틀	6,000				
	3인 이하	3,000	2인용 침대틀	8,000				
식 탁 (대리석)	6인 이상	12,000	유아용	3,000				
	4인 이상	8,000	어린이 2층	15,000				
탁 자	협탁	2,000	1인용 접이식	7,000				
	응접탁자	2,000	2인용 접이식	10,000				
	2인용	3,000	소파 겸용 침대	13,000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침 대 (돌,옥,황토 침대)	2인용 돌 옥 황토		30,000		
	10인용 미만	6,000		1인용 돌 옥 황토		25,000		
교차상발상	4인 이상	2,500	침대 헤드	2인용 이상		3,000		
	3인 이하	1,000		2인용 미만		2,000		
싱 크 대	상판길이 120cm 이상	6,000	쓰레기 통	사무실 옥외용	2,000			
	상판길이 120cm 미만	4,000		가정용	1,000			
	상판(대리석) 120cm 이상	12,000						
	상판(대리석) 120cm 미만	10,000						
개 수 대		4,000						

품 목 별			품 목 별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가 방 류 (캐리어)	골프채 가방	3,000	수 도 호 스	10m 당	1,000
	높이 50cm 이상	2,500		스 키	스키(부츠별도)
	높이 50cm 미만	1,500	스키부츠		2,000
빨 래 건조대	길이 1m 이상	2,000	액 자	높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1,000		높이 50cm 이상 ~ 1m 미만	2,000
계 시 판 (화이트보드)	가로 1m 이상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가로 1m 미만	1,000	어 (수족관) 항	가로1m 높이 60cm 초과	6,000
고 무 통	지름 1m 이상	5,000		가로1m 높이 60cm 이하	4,000
	지름 50cm 이상	3,000	항 아 리	높이 50cm 이상	2,000
	지름 50cm 미만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파 티 션	1㎡당	2,000	우 산	일반용	1,000
석 고 보 드	1㎡당	2,000	유 리	1㎡ 당	2,000
목 재 파 레 트	1㎡당	2,000	스노우 보 드		3,000
금 (가 정 용) 고	가장 긴면 1m 이상	8,000	이 불	1채당	2,000
	가장 긴면 1m 미만	5,000		인 형	1개당
난 로	석유난로	2,500	자 전 거	성인용	3,600
	가스난로	2,500		아동용 2륜	3,600
	전기	면제		아동용 3륜	2,400
다 리 미 판		1,000	장 난 감	길이 50cm 이상	2,000
도 마	가정용	1,000		길이 50cm 미만	1,000
	업소용	2,000	장 판	3.3㎡당	1,000
동 자 리 (대자리, 놀이 매트)	1㎡당	1,000		전기장판(1인용)	2,000
	자 석 매 트	매트리스 가격 준용		동일	전기장판(2인용)
바 득 판	두께 12mm 이상	1,000		옥 자석 온수 등 1인용	4,000
	두께 60mm 이상	2,000		옥 자석 온수 등 2인용	7,000
방 석	겨울용	1,000	카 페 트	3.3㎡당	2,000
	여름용	500	마 네 킹	1m 이상	5,000
배 기 후 드		2,000		1m 미만	3,000
베 개(라텍스베개)		1,000	조 명 기 구 (모든 규격)	폭, 높이 1m 이상	2,000
벽 시 계	길이 1m 이상	2,500		폭, 높이 1m 미만	1,000
	길이 1m 미만	1,000		상들리에	2,000
보 행 기		2,000	천 막	길이 6m 이상	7,000
유 모 차		2,400		길이 6m 미만	5,000
유아용 목마		1,000	아이스 박스	50L 이상	3,000
블 라 인 드 (자 바 라)	1㎡당	1,000		30L 이상	2,000
	목욕탕수건함			1,000	30L 미만
행 거	2단 행거	3,000			
	1단 행거	2,000			



생 활 용 품 류			기 타 류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카 시 트		2,000	세 면 대	세면대 세트	3,000
재 봉 틀		2,500	욕 조	일 반 용	6,000
커 턴	1㎡ 당	1,000		유 아 용	3,000
커 턴 봉		1,000	화 분	높이 50cm 이상	1,500
킥 보 드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라켓 (개당)	테니스 라켓	1,000	타 이 어	지름 110cm 이상	11,000
	베드민턴 라켓	500		지름 60cm ~110cm	5,000
텐 트	4인용 이상	4,000		지름 60cm 미만	3,000
	4인용 미만	3,000	파라솔	모든규격	2,000
피 아 노	일반	17,900	방충망	1㎡	2,000
	디지털	5,500	형광등 틀		1,000
오 르 간	일반	4,800	쌀 통		3,600
	전자식	3,000	드럼통		5,000
개 집		3,000	죽부인		1,000
켓 타워		3,000	등산스틱		1,000
헬스 기 구	런닝머신(수동)	15,000	전기판넬	3.3㎡당	2,000
	헬스자전거	7,000	CD꽂이		2,000
	스텝퍼	4,000	볼링공		3,000
	식업보드	4,000	소화기		3,000
화 환		3,000	컬러 박스 (공간 박스)	3단 이상	2,000
휠 체 어		3,000		2단 미만	1,000
골 프 채	개당	2,000	탁 구 대		7,000
에어풍선		3,000	발판 매트		1,000
미끄럼틀	유아용	5,000	신 발	1켤레	500
평 상	1.5mX1.5m 이상	7,000	안 마 기		2,000
	1.5mX1.5m 미만	5,000	안 마 의 자		10,000
(입) 간 판	40cmX100cm 당	4,000	발 마사지 기계		4,000
	가로 1m 이상	2,000	트램블린		1,000
	가로 1m 미만	1,000	의료용 침대		12,000
	고무통 입간판	5,000	유아용 자동차		3,000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유아용 그네		1,000
물 탱 크	1톤당	14,000	폐목재	1kg 당	200
	0.5톤 이상	6,500	폐플라스틱	1kg 당	200
	0.5톤 미만	3,000			
변 기		4,500			
보일러	16kcal/h 이상	10,000			
	16kcal/h 미만	7,500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한국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 9. (생략)</p> <p>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 ③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u>구의회</u>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영등포구의 책무) ① ~ ③ (생략)</p> <p>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13조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민원성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 -----.</p> <p>제2조(정의)----- ----- <u>뜻은</u> ----- --.</p> <p style="padding-left: 20px;">1.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④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u> ----- -----.</p> <p>제4조(<u>구청장</u>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 ----- ----- ----- -----.</p>

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사용

2. (생략)

3. 대형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일시, 장소에 배출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생

1. -----  
-----  
-----  
----- 배출한다.

다만,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무게를 제한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 동장 -----  
-----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  
-----  
-----  
-----  
-----  
-----  
----- 별표 5 -----  
-----

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  
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략)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  
과 같다.
3. (생략)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  
료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  
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할 동장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  
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2. (생략)

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  
경)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  
지를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배출 취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  
-----  
-----.

1. (현행과 같음)
2. ----- 별표 2  
와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  
료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동장 -----  
-----  
-----.  
-----  
-----.
2. (현행과 같음)

③ -----  
-----  
----- 동장  
-----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①、② (생략)

③ 공공장소에서의 집회、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집회、행사의 주관자、주최자로부터 사전에 예치 받을 수 있다.

④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신고서에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생략)

제30조(가산금 등) ①、② (생략)

③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수수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2항 -----  
-----  
----- .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 동장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제30조(가산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33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대상은 별표 5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2. ~ 4. (생략)

③ ~ ⑦ (생략)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

제6장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의 지급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  
-----  
-- 영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중 가목 -----.

② -----  
-----  
-----.

1. ----- 생년월일-----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삭제>

서와 서울특별시 OCR처리용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인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삭 제〉

〈삭 제〉

제36조(의견진술) 〈삭 제〉



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

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삭 제〉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연도별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7년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5 ℓ	100	130
	10 ℓ	200	250
	20 ℓ	400	490
	30 ℓ	600	740
	50 ℓ	1,010	1,250
	75 ℓ	1,520	1,880
	100 ℓ	2,030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ℓ	290
20 ℓ		580	800
50 ℓ		1,490	2,000
75 ℓ		2,220	3,000
100 ℓ		2,960	4,000
특수규격 봉투	10 ℓ	670	1,020
	20 ℓ	1,330	2,040
	50 ℓ	3,320	5,100

비고 : 규격봉투가격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연도별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7년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	2 ℓ	-	60
	3 ℓ	-	90
	5 ℓ	100	130
	10 ℓ	200	250
	20 ℓ	400	490
	30 ℓ	600	740
	50 ℓ	1,010	1,250
	75 ℓ	1,520	1,880
	100 ℓ	2,030	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	10 ℓ	290
20 ℓ		580	800
50 ℓ		1,490	2,000
75 ℓ		2,220	3,000
100 ℓ		2,960	4,000
특수규격 봉투	10 ℓ	670	1,020
	20 ℓ	1,330	2,040
	50 ℓ	3,320	5,100

비고 : 규격봉투가격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15조제2호 관련)

용량(ℓ)	용도
5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1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3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별표 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15조제2호 관련)

용량(ℓ)	용도
2	생활폐기물용
3	재사용
5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1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2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30	생활폐기물용, 재사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현 행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연번	품 목 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1	오디오본체	대형(높이1M이상)	5,000	
2		소형(높이1M미만)	3,000	
3	오디오스피커	1개당	1,500	
4	오디오장식장		2,500	
5	정수기	20ℓ 이상	5,000	
6		20ℓ 미만	3,000	
7	전기밥솥	10인 이상	2,500	
8		10인 미만	2,000	
9	V T R (DVD포함)		3,000	
10	카세트라디오		1,500	
11	다리미		1,000	
12	다리질 판		1,000	
13	헤어드라이		1,000	

개 정 안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가 전 제 품 류	자동 판매기	음료· 담배	14,000	온 수 기	높이 1m 이상	2,000
		자가 소형	5,500		높이 1m 미만	면제
	TV	42인치 이상	6,000	오디오 본체	높이 1m 이상	5,000
		25인치 이상	3,600		높이 1m 미만	면제
		25인치 미만	3,000	전자 시계		면제
	가스 레인지		2,500	세 단 기	높이 1m 이상	4,5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 1m 이상	4,800		높이 1m 미만	면제
		게임기 오락기	높이 1m 미만	2,400	선 풍 기	
	업소용		10,000	DVD,비디오 (VTR)		면제
	50cm 이상		5,000	오디오 스피커		면제
	공기 청정기	50cm 미만	3,000	전자레인지		면제
		높이 1m		전기 밥솥	(보온밥솥)	면제

14	선풍기	업소용	2,500	
15		가정용	1,800	
16	전화기		1,000	
17	청소기	가정용	2,000	
18		업소용	3,500	
19	자동판매기	대형	14,000	
20		소형	5,500	
21	냉장고	500ℓ 이상	9,500	
22		300ℓ 이상	7,100	
23		300ℓ 미만	4,800	
24		업소용	15,000	
25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6,000
26	12인치 이상		3,600	
27	텔레비전 받침		2,500	
28	세탁기	6kg 미만	3,600	
29		6kg 이상	5,000	
30	탈수기		2,400	
31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2,400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면제			전화기·휴대폰	면제	
	김치냉장고	130L 이상	5,000			청 소 기	면제	
			130L 미만	3,000			카세트 라디오	면제
	냉장고	업소용	15,000			커피포트	면제	
			500L 이상	9,500			헤어드라이어	면제
			500L 미만	7,100			컴퓨터 (본체, 모니터)	면제
			300L 이상	4,800				
	에어컨 설외기	높이 1m 이상	2,000			컴퓨터복합기	면제	
			높이 1m 미만	면제			전기 비데	면제
	에어컨	264m <sup>2</sup> 이상	9,000			컴퓨터 키보드	면제	
			66m <sup>2</sup> 이상	6,000			탈 수 기	면제
			66m <sup>2</sup> 미만	4,000			토 스 터 기	면제
	온풍기	264m <sup>2</sup> 이상	8,500			팩 시 밀 리	면제	
			66m <sup>2</sup> 이상	5,500			휴대폰 충전기	면제
			66m <sup>2</sup> 미만	3,500				
	복사기 (영업용 프린터)	업소용	9,500			스 캐 너	면제	
			높이 1m	5,000			프 린 터	면제

32		높이 1m 미만	2,000	
33	가습기		1,500	
34	보일러	16,000cal/h 이상	10,000	
35		16,000cal/h 미만	7,500	
36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37	온풍기	80평 이상	8,500	
38		20평 이상	5,500	
39		20평 미만	3,500	
40	에어컨	80평 이상	9,000	
41		20평 이상	6,000	
42		20평 미만	4,000	
43		전기난로	2,400	
44	난로	석유난로	2,500	
45	팬히터	벽걸이형	2,000	
46	썩크대	60cm 미만	3,500	
47	개수대		4,000	
48	밥상	4인 이상	2,500	
49		3인 이하	1,000	

		이상						
		높이 1m 미만	면제					가습기
	환풍기	업 소 용	2,500					
		가 정 용	면제					
	세탁기	6kg 이상	5,000					
		6kg 미만	3,600					
	식기 건조기	높이 1m 이상	3,500					
		높이 1m 미만	면제					
	식기 세척기	높이 1m 이상	3,500					
		높이 1m 미만	면제					
정수기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면제					믹서기	면제
		높이 1m 이상	3,500					
		높이 1m 미만	면제				전기 히터	면제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면제				카메라	면제
							프로젝터	면제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가	TV받침		3,000	가	진 열 대 선반 (목재, 철재)	1㎡ 당	3,000	
		3인용	6,000			구	캐비닛	5단 이상
구	의자	2인용	4,500	4단 이상	3,600			
		1인용	3,000	3단 이하	2,400			
류				류				

50	교자상		2,000	
51	쌀통		3,600	
52	녹즙기		2,000	
53	식기건조기		1,500	
54	식기세척기		3,500	
55	믹서기		1,500	
56	김치 독	옹기 류 제외	4,000	
57	환풍기	가정용	1,500	
58		업소용	2,500	
59	전자레인지		2,500	
60	가스 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800	
61		높이 1m미만	2,400	
62	가스렌지		2,500	
63	식탁	5인 이상	4,500	
64		4인 이하	3,500	
65		3인 이하	2,500	
66	스탠드 옷걸이		2,000	
67	서랍장	5단 이상	4,800	
68		4단 이하	2,400	

		좌식 의자	1,000		병 풍	2폭당	1,000
		바퀴 달린 의자(대형)	5,000		창 문		2,000
		바퀴 달린 의자(소형)	3,000				
	거울	1㎡ 당	2,000	오디오 장식장		2,500	
		1㎡ 미만	1,000		장 식 장 (유리 별도)	높이 180cm 이상	10,000
렌지대 수납장		4,000	높이 120cm 이상			5,500	
화장대	가정용	3,600	높이 120cm 미만	4,000			
	문 갑		3,600	찬 장	폭 130cm 이상	10,000	
	문 짝	1 개당	2,000		폭 120cm 이상	7,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폭 90cm 이상	4,000	
		4단 이하	3,000		폭 90cm 미만	3,500	
	신발장	높이 1.5m 이상	4,000	책 상 (유리별도)	서랍 없음	3,000	
		높이 1.5m 미만	3,000		편수 (한쪽서랍)	5,000	
	쇼 파 (안락의자)	4인용	10,000		양수 (양쪽서랍)	8,300	

69	화장대		3,600	
70	신발장	높이 120cm이상	3,500	
71		높이 120cm미만	2,400	
72	문갑		3,600	
73	장식장		4,800	
74	찬장, 진열장		3,500	
75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76		10인용 미만	6,000	
77	응접탁자		2,000	
78	장롱	120cm(4자) 1쪽	17,900	
79		90cm(3자) 1쪽	11,900	
80	아기옷장		3,000	
81	소파	1인용	2,400	
82		2인용	6,000	
83		3인용	7,500	
84		4인용	10,000	
85	의자	1인용	2,000	
86		2인용	4,500	

		3인용	7,500			H형 책상 (상판, 책상, 서랍포함)	10,000
		2인용	6,000			컴퓨터 책상	3,000
		1인용	3,000			책상 상판	2,000
		스툴	2,500				
	스탠드 옷걸이		2,000		책 장	90cm X 180cm 이상	9,000
장롱	가로 120cm 이상	17,900				90cm X 180cm 미만	5,000
	가로 90cm 이상	11,900					
	가로 90cm 미만	7,000					
	아기 옷장		3,000		책 꽂 이 (책 상 용)	3단 이상	3,000
	비닐 옷장		2,000			3단 미만	1,500
식 탁		5인 이상	5,000		침 대	1인용 세트	12,000
		4인 이하	4,000			2인용 세트	16,000
		3인 이하	3,000			1인용 메트리스 (라텍스)	6,000
		6인 이상 (대리석)	12,000			2인용 메트리스	8,000



87		3인용	6,000	
88	침대	1인용 세트	11,900	
89		1인용 매트리스	6,000	
90		1인용 침대 틀	6,000	
91		2인용 세트	17,900	
92		2인용 매트리스	9,500	
93		2인용 침대 틀	8,000	
94		유아용	3,000	
95		자석매트	침대 매트리스 규격	침대 가격 적용
96	팩시밀리		3,000	
97	복사기		9,500	
98	세단기		4,500	
99	책장	90cm×180cm 이상	8,500	
100		90cm×180cm 미만	5,000	
101	책꽂이	3단 미만	1,500	
102		3단 이상	3,000	
103	캐비닛		4,800	
104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600	

탁자	회의용 탁자	4인 이상	8,000	(라텍스)			
		협탁	2,000		1인용 침대틀	6,000	
		응접탁자	2,000		2인용 침대틀	8,000	
		2인용	3,000		유아용	3,000	
	교자상·밥상	10인용 이상	9,000		어린이 2층	15,000	
		10인용 미만	6,000		1인용 접이식	7,000	
	싱크대	4인 이상	2,500		2인용 접이식	10,000	
		3인 이하	1,000		소파 겸용 침대	13,000	
	침대 (돌, 옥, 황토 침대)	상판길이 120cm 이상	상판길이 120cm 이상		6,000	2인용 돌, 옥, 황토	30,000
			상판길이 120cm 미만		4,000	1인용 돌, 옥, 황토	25,000
상판(대리석) 120cm 이상		상판(대리석) 120cm 이상	12,000	침대 헤드	2인용 이상	3,000	
	상판(대리석) 120cm 미만	10,000	2인용 미만		2,000		
쓰레기 통			사무실		2,000		

105		3단 이하	2,400	
106	책상	양쪽서랍	8,300	
107		한쪽서랍	4,800	
108		컴퓨터	3,000	
109	피아노	일반	17,900	
110		디지털	5,500	
111	오르간		4,800	
112	컴퓨터본체		4,000	
113	컴퓨터모니터	20인치 이상	3,000	
114		20인치 미만	2,000	
115		LCD	2,000	
116	컴퓨터 자판		1,000	
117	노트북컴퓨터		3,000	
118	프린터	최대 A4 이하	3,000	
119		최대 B4 이상	4,000	
120	카펫	1평당	2,000	
121	장판	1평당	1,000	
122	돛자리	1평당	1,000	

	개수대		4,000			옥외용		
						가정용	1,000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	가방류 (캐리어)	골프채 가방	3,000	생 활 용 품 류	수 도 호 스	10m 당	1,000	
		높이 50cm 이상	2,500			스 키	스키(부츠별도)	3,000
		높이 50cm 미만	1,500				스키부츠	2,000
	빨 래 건조대	길이 1m 이상	2,000			액 자	높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1,000		높이 50cm 이상 ~ 1m 미만		2,000	
	게시판 (화이트 보드)	가로 1m 이상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가로 1m 미만	1,000		어 항 (수족관)	가로1m 높 이 60cm 초과	6,000	
	고무통	지름 1m 이상	5,000			가로1m 높 이 60cm 이하	4,000	
		지름 50cm 이상	3,000		항 아 리	높이 50cm 이상	2,000	
		지름 50cm 미만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123	전기담요		2,000	
124	이불	1채당	2,000	
125	인형 류	1개당	2,000	
126	장난감 류	1개당	1,500	
127	어항	가로 1m 높이 60cm 초과	6,000	
128		가로 1m 높이 60cm 이하	4,000	
129	목욕탕 수건 합		1,000	
130	재봉틀		2,500	
131	거울	높이 50cm 이상	1,500	
132		높이 50cm 미만	1,000	
133	가방류	높이 50cm 이상	2,500	
134		높이 50cm 미만	1,500	
135	골프가방		3,000	
136	금고		2,000	
137	병풍	2쪽 당	1,000	
138	화분	PVC 2개당	1,000	
139	항아리	높이 30cm 이하	1,000	
140		높이 30cm 초과	2,000	

	파티션	1㎡ 당	2,000		우 산	일반용	1,000	
	석고보드	1㎡ 당	2,000		유 리	1㎡ 당	2,000	
	목재 파레트	1㎡ 당	2,000		스노우 보드		3,000	
	금고 (가정용)	가장 긴면 1m 이상	8,000		이 불	1 채당	2,000	
		가장 긴면 1m 미만	5,000					
	난 로	석유난로	2,500		인 형	1 개당	2,000	
		가스난로	2,500					
		전기	면제					
	다리미판		1,000		자 전 거	성인용	3,600	
	도 마	가정용	1,000			아동용 2륜	3,600	
		업소용	2,000			아동용 3륜	2,400	
	돛자리	1㎡ 당	1,000			장 난 감	길이 50cm 이상	2,000
							길이 50cm 미만	1,000
			장 판	3.3㎡ 당	1,000			

141	세면대		3,000	
142	욕조		6,000	
143	물탱크	15인용 이상	14,000	
144		15인용 미만	6,500	
145	변기		4,500	
146	비데		1,000	
147	쓰레기통	가정용	1,000	
148		사무실용, 옥외용	2,000	
149	유모차		2,400	
150	보행기		2,000	
151	유아용목마		1,000	
152	시계	대형	2,500	
153		소형	1,000	
154	액자	대형	2,000	
155		소형	1,000	
156	자전거	성인용	3,600	
157		아동용(이륜)	3,600	
158		아동용(삼륜)	2,400	

(대자리, 놀이매트)					
자석매트	매트리스 가격 준용	동일		전기장판(1인용)	2,000
바둑판	두께 12mm 이상	1,000		전기장판(2인용)	3,000
	두께 60mm 이상	2,000		옥 자석 온수 등 1인용	4,000
방 석	겨울용	1,000		옥 자석 온수 등 2인용	7,000
	여름용	500			
배기후드		2,000		카 페 트	3.3㎡당 2,000
베개(라텍스베개)		1,000		마네킹	1m 이상 5,000
					1m 미만 3,000
벽시계	길이 1m 이상	2,500		조명기구 (모든 규격)	폭, 높이 1m 이상 2,000
	길이 1m 미만	1,000			폭, 높이 1m 미만 1,000
보행기		2,000			상들리에 2,000
유모차		2,400		천 막	길이 6m 이상 7,000

159	문짝	1개당	2,000	
160	폐목재	1kg당	200	
161	폐플라스틱	1kg당	200	
162	고무통	대형	3,000	
163	타이어	대형(1100mm 이상)	11,000	
164		중형(600~1100mm)	5,000	
165		소형(600mm 미만)	3,000	
166	유리	m <sup>2</sup> 당	2,000	
167	오락기	업소용	10,000	
168		가정용	3,000	

	유아용 목마		1,000					
	블라인드 (자바라)	1m <sup>2</sup> 당	1,000			길이 6m 미만	5,000	
	목욕탕 수건함		1,000		아이스 박스	50L 이상	3,000	
	행거	2단 행거	3,000			30L 이상	2,000	
		1단 행거	2,000			30L 미만	1,000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	카시트		2,000	기 타 류	세면대	세면대 세트	3,000	
	재봉틀		2,500		욕조	일반용	6,000	
	커튼	1m <sup>2</sup> 당	1,000			유아용	3,000	
	커튼봉		1,000		화분	높이 50cm 이상	1,500	
	킥보드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라켓 (개당)	테니스 라켓			1,000	타이어	지름 110cm 이상	11,000
		배드민턴 라켓			500		지름 60cm ~110cm	5,000
	텐트	4인용	4,000					

	이상 4인용 미만	3,000		지름 60cm 미만	3,000	
피아노	일반	17,900		파라솔	모든규격	2,000
	디지털	5,500		방충망	1 m <sup>2</sup>	2,000
오르간	일반	4,800		형광등 틀		1,000
	전자식	3,000		쌀 통		3,600
개 집		3,000		드럼통		5,000
캐트 타워		3,000		죽부인		1,000
헬스기구	런닝머신(수동)	15,000		등산스틱		1,000
	헬스자전거	7,000		전기관넬	3.3 m <sup>2</sup> 당	2,000
	스텝퍼	4,000		CD꽃이		2,000
	شط업보드	4,000		볼링공		3,000
화 환		3,000		소화기		3,000
휠체어		3,000		컬러 박스 (공간 박스)	3단 이상	2,000
골프 채	개당	2,000			2단 미만	1,000
에어풍선		3,000		탁구대		7,000
미끄럼틀	유아용	5,000		발판매트		1,000
평 상	1.5mX 1.5m 이상	7,000		신 발	1켤레	500
	1.5mX 1.5m 미만	5,000		안마기		2,000
(입)간판	40cm X 100cm 당	4,000		안마 의자		10,000
	가로 1m 이상	2,000		발 마사지 기계		4,000
	가로 1m 미만	1,000		트램블린		1,000
	고무통 입간판	5,000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의료용 침대		12,000
물탱크	1톤당	14,000	유아용 자동차		3,000
	0.5톤 이상	6,500	유아용 그네		1,000
	0.5톤 미만	3,000	폐목재	1kg 당	200
변 기		4,500	폐플라스틱	1kg 당	200
보일러	16kcal/h 이상	10,000			
	16kcal/h 미만	7,500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